

N · E · W · S · P · L · A · Z · A

# 해외 경쟁정책 동향

본협회 조사부

미국 · EU

## EU, 보잉사와 맥도널 더글라스사의 기업결합계획에 이의 제기

유럽위원회는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가 140억 달러로 맥도널 더글라스사를 매입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보잉사는 상업용 제트 항공기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으므로 당해 대형 기업결합은 저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문제에 정통한 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몇몇 대형 미국 항공사에 대한 독점적 공급업체로 선정된 보잉사의 일련의 신규 계약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과 더불어, 지난 21일 보잉사에 전달된 공식 "이의성

명서"에 담겨진 바 유럽위원회가 제기한 반트러스트 문제 및 공정성 문제 중 하나라고 한다.

오랜 기간의 침묵 끝에 발표된 당해 성명서는 또한 보잉사 및 맥도널 더글라스사에 대한 국방부와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간접 보조금이라는 미묘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이의성명서에서 EC는 이들 두 회사가 결합으로 탄생할 회사가 연구 및 개발에 대하여 공공기금을 이용하는 정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결국 상업용 항공기 개발에 관한 불공정한 우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 에어버스사는 시에틀에 소재한 보잉사 다음으로 큰 상업용 제트항공기 생산업체 컨소시엄이다.

당해 성명서에 정통한 자에 따르면 유럽위원회의 성명서는 또한 이들 두 회사가 제창한 바

맥도널 더글라스사는 상업용 항공기 사업부문에서 더이상 의미 있는 경쟁자가 아니라는 관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보잉사의 관계자들은 두꺼운 당해 문서를 하루 종일 연구한 뒤 이러한 주장이 공개되기도 전에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보잉사는 또한 임원들이 당해 기업결합은 계획대로 이번 여름에 승인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하였다.

세인트루이스에 소재한 맥도널 더글라스사도 성명을 발표하고 유럽위원회의 결론 및 EC 기업결합 심사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당해 성명서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들은 이미 동 위원회의 경쟁 문제 담당인 Karel Van Miert에 의해 공공연히 설명되었지만 유럽위원회가 이것들을 연결짓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법이론은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보잉 사의 맥도널 더글라스 사 취득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승인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는 당해 기업결합을 강력히 지지하는 국방부의 의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유럽 반트러스트 집행당국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론과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의 정치적 영향력 및 마케팅 역량간의 길고 치열한 격돌의 장이 마련되었다.

유럽위원회의 이의제기는 중국적으로는 FTC에 대한 기업결합 저지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해 이의제기는 또한 잠정적으로 6월 중순에 브뤼셀에서 개최되기로 잡힌 유럽위원회 청문회의 주제가 될 것이다.

산업분석가들 및 전문가들은 5월 21일의 움직임은 유럽위원회의 입장이 계속 강경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유럽 국가들은 국제무역상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일종의 무역상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보잉 사의 회장인 Phillip M. Condit는 성명서에서 "당해 기업결합이 유럽연합 내에서 다

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중 근본적인 반트러스트 문제는 보잉 사와 맥도널 더글라스 사의 상업용 항공기 사업부 문간의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것인가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 답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Condit은 밝혔는데, 왜냐 하면 당해 문제는 이미 시장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1996년 맥도널 더글라스 사의 상업용 항공기 부문 신규 판매 중 세계시장 점유율은 4%로 떨어졌음을 언급했다. 보잉 사의 점유율은 60% 이상이며, 에어버스 사가 나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Van Miert 및 기타 유럽 관리들은 보잉 사가 AMR Corp.의 American Airlines 및 델타 항공의 독점적 항공기 공급업체로 선정된 최근 일련의 계약에 특히 비판적이었는데, 이에 는 컨티넨탈 항공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Condit 회장은 American Airlines 및 델타 항공이 배타적 협정 체결을 위해 보잉 사와 접촉하였다고 하였다.

보잉 사는 간접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는 미국과 유럽 당국

간에 해결되어야 하며 유럽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왔다.

유럽위원회는 당해 이의제기에서 일정한 기업결합에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적 지위의 남용"을 행한 것으로 보일 경우 EC가 당해 기업결합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조약에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만일 유럽 당국이 그러한 남용행위를 발견할 경우 당해 기업결합을 저지하도록 미국 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당해 규정은 또한 유럽연합이 두 미국회사의 연간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Van Miert가 산정한 당해 벌금은 4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 97, 5/22, The Wall Street Journal

## 미국

### 사법성·연방거래위원회 (FTC), 미국·호주 독점금지협 력에 관한 협정의 획기적 개정 안 공포

미국 자네트·리노 사법성 장관 및 로버트 뷔도스키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지난 4월 17일 반독점 집행의 국제적 협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1994년 국제 반독점집행원조법(이하 「집행원조법」이라 함)에 기초를 둔 최초의 케이스로 미국정부와 호주정부간에 증거의 교환 및 반독점 심사의 상호원조를 위해 협정안에 대한 합의 내용의 요지를 공포했다.

양국은 이 협정에 따라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보정의 확약을 조건으로 반독점법 집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증거를 교환하고 상대방에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 협정안이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되면 동 협정은 집행원조법에 따른 최초의 협정이 된다.

자네트·리노 사법장관은 「이 협정은 오늘날 글로벌 경제

하의 반독점 집행의 개선을 위해 진일보가 된다. 반독점의 분야에 있어서도, 다른 법집행분야와 마찬가지로 두 나라간의 상호원조 협정을 미국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미국법을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논평하였다.

사법성은 반독점 사건에 연관된 외국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수집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1994년 상반기에 의회에 대하여 집행원조법의 제정을 요구했다.

의회는 동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1994년 11월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동 법이 제정되었다.

협정안은 1982년 서명한 미국·호주 반독점 협력을 위한 협정과 함께 수년간의 사법성·연방거래위원회와 호주의 경쟁·소비자 위원회 간에 진전시킨 친밀한 관계를 기초로 해서 작성된 것이다.

크라인 반독점 국장 대행은 「반독점국의 업무에 있어서는 국제 카르텔에 대한 소추를 아주 중요시 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개의 사건에 있어서 부당한 카르텔 행위를 소추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은 외국과의 상호

원조 협정이 없기 때문에 저해되어 왔다. 새로운 협정은 반독점국의 법집행 활동을 원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제 카르텔이나 기타 반경쟁적 행위에 관해서 호주의 경쟁당국과의 협력관계가 강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협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호주 양국은 양국에 관계되는 상호원조법에 따라 또한 요청의 이유가 되어 있는 행위가 피요청국의 법률의 위반여부에 관계 없이 광범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증거의 제공 또는 입수에 관해서 상호주의를 기초로 상호원조 및 협력」을 한다.

- 협정에 따라 입수한 증거는 집행원조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반독점의 집행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증거를 인도하기 전에 당해 요청을 이행하는 일이 동국의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협정은 「관계인에 대해 동인의 법적인 정당한 권리 또는 특권을 침해해서 증거의 제출을 강요하는」것은 아니라는 요지를 규정하고 있다.

● 호주로부터의 원조요청은 집행원조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성을 창구로 해서 통보된다. 그러나 당해 요청에 관해서는 적절히 사법성 또는 연방거래위원회가 이행한다. 사법성과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직접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 (Australian Competition Consumer Commission : 이하 「ACCC」라 함)에 대해 원조 요청하는 일이 가능하며 미국 으로부터 요청에 관해서는 ACCC 또는 호주 사법성이 이행한다.

● 집행원조법에 따라 교환되는 중요한 기업 정보의 비밀보호에 관한 의회의 고려를 반영해서 협정은 당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비밀보지 의무를 정하고 있다.

크라인 반독점국장 대행은 「이 협정은 국제적 규모로 일어나는 반경쟁적 행위에 관해 효과적 집행을 하기 위해 세계의 주요한 무역 상대국과 맺은 두 국가간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모델이 된다. 이 협정은 미국이 외국상대국과의 쌍방향의 협력을 위탁하고 있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미국 소비자 및 상대국 소비자에 이익을 주는

일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집행원조법은 사법성에 대해 협정안을 관보에 공시하고 45일간 서면에 의거 국민의 의견 (Public Comment)을 듣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미국 및 호주 정부는 당해 기간에 주 및 준주(準州)에 협정안을 송부하고 의견을 구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및 호주 정부는 상기 절차에 걸쳐 나타난 결과에 따라 협정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97. 4/17, 미국사법성 발표

### 새로운 반트러스트 규칙으로 기업결합 심의될 듯

미 연방 반트러스트 집행당국은 기업결합 평가시에 비용절감과 기타 효율들을 고려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전 같았으면 반트러스트상 이유로 거부되었을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을 얻기가 용이해졌다.

관리들은 지난 8일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공동으로 개정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말미암아 기업들은 가격 인하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 기업

결합은 반경쟁적 우려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FTC 위원장인 Robert Pitofsky는 “몇몇 기업결합 계획은 예전 같았으면 성공하지 못하였겠지만 이제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건의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며, 이는 잠재적인 반경쟁적 문제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창출될 효율이 지대한 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어떠한 효율이 기업결합에 기인하는 것인지 반트러스트 집행당국이 결정하는 방법 및 주장되는 효율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결합하는 기업들은 두 공장을 결합함으로써 - 각각 최대생산능력 이하에서 가동됨 - 가격 인하를 야기할 수 있는 효율을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새로운 규칙은 잉여시설과 높은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제조업, 보건산업 및 방위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법무부와 FTC 공동작업반의 10개월간의 연구 끝에 이루어

진 이 변화는 미국 반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유럽 및 캐나다의 것에 유사해지도록 할 것이며 미국 회사들이 외국에서 더욱 평등한 기초 위에서 경쟁하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반트러스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 새로운 규칙은 기업결합 건수가 지난 5년간 두배 이상 증가하여 작년에는 3,000건을 넘은 거대한 기업결합의 물결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몇몇 최근의 예외를 제외하고, 정부는 비록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변경 또는 자산매각을 요구하기는 하였지만 기업결합 계획의 대다수를 승인하여 왔다.

이 규칙은 1992년 연방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중요한 일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전하여 온 접근방식을 명문화하고 있다. “더 많은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점진적인 변화이지 혁명적인 변화는 아니다.”라고 기업결합 집행 담당 차관보인 Larry Fullerton은 말하였다.

레이건 행정부 때에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을 역임한 Charles F. Rule은 당해 변화

는 “그것이 인쇄되어 나타났다는 것을 제외하면 과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Rule은 이러한 변화가 Staples Inc.의 Office Depot Inc. 매입 노력과 같은 일정 사건에 대한 FTC의 공격적 태도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당해 사건 - FTC가 지난 주에 표결을 거쳐 저지하기로 한 기업결합 - 은 엄격한 시장획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효율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고 그는 밝혔다.

반트러스트 전문 법률가들은 반트러스트 집행기관들은 얼마 동안 기업결합에서 효율을 고려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지나치게 큰 시장력을 형성할 기업결합의 항변으로서 효율을 인정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하였다. “효율은 반경쟁적 효과가 크지 않을 때 기업결합 분석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밝히고 있다. “효율이 발생한다고 하여 독점 또는 독점에 가까운 상태를 야기하는 기업결합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정부는 말하였다.

정부는 효율 중에도 더욱 설

득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한때 소유기업이 달랐던 공장들간에 생산설비를 한 곳으로 이전하고 이로 인해 결합하는 기업들이 한계생산비를 줄임으로써 얻는 비용 절감은 증명가능하며 상당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본비용, 조달비용, 간접비용 또는 연구 및 개발비용의 절감은 설득력이 적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기업결합에서 간접비용의 축소는 단위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법률가들은 말하였다. “가장 크게 이득을 볼 산업은 높은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산업이다”라고 워싱턴 주재 Jones Day Reavis & Pogue 법률회사의 변호사인 Phillip Proger는 말하였다. “서비스산업은 그리 큰 덕을 보지 못할 것이다.” 몇몇 전문가들은 FTC 위원장인 Pitofsky의 중심적 역할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는 레이건 행정부의 느슨한 반트러스트 집행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비판자였다. 한 전문가는 당해 규칙을 자유화하려는 그의 노력을 비난 대통령의

對중국 개방정책에 비유하였다.

■ 97, 4/9, The Wall Street Journal

### FTC 및 반트러스트국, 합병심사에 있어서 효율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공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사법성 반트러스트국은, 4월 8일 합병심사에 있어 효율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 공표했다. 금회의 개정은 연방거래위원회 및 사법성이 공동작성한 현행의 1992년 합병 가이드라인의 「제4장 효율성」을 개정한 것이다. 합병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효율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일을 명확하게 하였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995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서 경제의 글로벌화(세계화)의 전진 및 하이텍 산업의 성장이라 칭하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반트러스트법의 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합병에 대한 효율성의 평가 방법 등 11개 항목에 이르는 테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산업계, 소비자단체, 변호사, 법경제학자 등

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왔다. 공청회 의견을 받아 연방거래위원회 사무국은 1996년 5월에 동 의견을 취합하여 정리하고, 「21세기에의 전망 : 신하이텍·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몇 가지의 제언을 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연방거래위원회 및 사법성 반트러스트국에 의한 공동의 1992년 합병 가이드라인 수정의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설치이다. 1996년 6월부터 동 태스크포스(task force)에서 합병심사에 있어서 효율성의 분석방법 등이 검토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이에 대한 결론을 망라하여 작성·발표한 것이다.

연방거래위원회(FTC) 신문 발표문은 다음과 같다.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사법성 반트러스트국은 지난 4월 8일 합병심사에 있어서 효율성의 주장에 관한 경쟁당국의 분석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당국이 공동 작성한 합병가이드라인을 개정된 요지를 발표했다.

이번의 개정 가이드라인은 일반국민, 양경쟁당국 및 합병기

업에 대해 합병에 관한 효율성에 따라 합병기업이 가격인하, 신제품의 개발 또는 경쟁축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합병기업의 효율성의 주장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뷔도스키 연방거래위원장은 「경쟁당국은 지금까지 합병이 소비자 및 국민경제에 이익을 가져오므로써 효율성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고 재판은 과거 20년 이상 합병에 있어 효율성의 역할에 주목하지 않았다. 더욱이 금일의 전략적 합병의 일부는 1970년대의 Conglomerate의 합병, 1980년대의 Junk Bond·Finance에 의한 적대적 매수와 비교해서 효율성을 가짐으로써 실현가능성이 보다 높아져 있다.

금회의 개정은 합병에 대한 효율성 분석에 있어 반트러스트와 타분야에 대한 효율성 분석도 균형을 맞추어 주고 오늘날의 경쟁환경에 합치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1992년 수평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이다. 「신하이텍·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공청회 보고서를 공포한 후인 1996년 6월에 설치한 공동 태스크포스(task force)에 의하여 원안이 작성된 것이다.

동 위원장은 「당해 개정은 공청회에 있어서 토의 참가자들이 논평한 현안들 가운데 몇 개에 대하여 회답을 한 것이며 정부의 노작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쟁정책을 될 수 있는 한 간결하고 명료히 표명함으로써 일반 국민은 경쟁당국이 효율성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다 잘 이해하고 또한 기업도 장래의 합병에 관해서 반트러스트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보다 줄이는 데 있다. 더욱이 우리가 운영방침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하는 것은 각각의 경쟁당국내 뿐만 아니라 양경쟁당국간에 효율성의 분석에 대하여 통일성을 확실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쟁당국의 효율성 분석 방법을 정비하는 것은 법원이 합병소송에 있어서 효율성의 주장에 부딪혔을 때의 유익한 지침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

도 있다.」

〈개정 가이드라인 주요 요점〉

● 개정 가이드라인은 계획된 합병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살시키는지 여부에 관한 분석에 있어 효율성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영향의 정도는 효율성에 따라 합병기업이 경쟁적인 행동을 하고, 가격을 인하하고 품질개선, 서비스의 향상, 신제품의 판매를 하는 정도에 의존하게 된다.

● 어떤 형태의 효율성이 계획된 합병에 기인하는가 및 경쟁에 대하여 큰 희생을 강요하는 일 없이 다른 방법으로 달성되는 어떠한 효율성이 있는가에 관하여 보다 정확히 정의하고 있다.

● 합병 당사회사는 주장하는 효율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명확히 하고 있다.

● 효율성이 어떻게 합병의 경쟁촉진효과의 분석을 위한 요소가 되는가를 설명함과 동시에 효율성의 편익의 실현이 지연되는 경우 취급 방법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개정 가이드라인은 효율성이 문제가 될 경우와 효율성

이 현실적으로는 중요성이 없는 경우의 지표를 표시하여 줌으로써 중요하게 공헌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뷔도스키 위원장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경쟁당국이 지금까지 취급하는 데는 모순이 전혀 없다. 즉, 효율성이 반경쟁적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중요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독점 또는 독점에 가까운 상황을 갖게 되는 합병 계획의 경우에는 정당화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은 기업이 자원절약적이라고 주장하는 효율성의 어떤 형태가 실제에 있어 설득력이 있다고 동시에 실질적인가(또는 그렇지 않은가)에 관해서 몇개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경쟁당국의 합병에 관한 운용방침에 관해 예측가능성을 증대시켜 주지만 반트러스트법에 의하여 합병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항상 무엇인가의 판단이 수반된다.

금번 가이드라인으로 표시한 기준은 생각할 수 있는 광범위한 상황 및 예기치 못한 실제의 상황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도 있다. 뷔도스키 위원장은 「당해

기준은 우리들의 최근의 합병 심사에 관한 방침을 극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2, 3의 부당한 합병사안에 있어서 중요하게 될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위원회는 1992년 수평합병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대하여 5대 0으로 승인했다.

■ 97. 4/8, FTC · 사법성 신문발표문

### Bell Atlantic 사 - Nynex 사건 기업결합 인가

미국 법무부는 230억 달러로 Nynex Corp.를 매입하려는 Bell Atlantic Corp.의 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이는 현재 통신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열풍에서 정부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다수의 비평가들은 정부가 Bell 계 독점 사업자들 중 가장 큰 이들 두 회사의 결합을 인가하지 않리라 예상하였는데, 이들 업체는 뉴욕, 필라델피아 및 워싱턴 D.C.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있는 시장에서의 지역전화사업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1989년 RJR Nabisco 사 기업결합에 뒤이은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기업결합이며, 이로 인해 버지니아 주부터 메인 주까지의 전화사업을 통괄하는 연간수입 290억 달러의 거대기업이 탄생한다.

이 거래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작년에 전반적인 통신산업규제 완화법을 제정함으로써 독점사업자들간에 경쟁이 도입되리라 생각하였던 의회위원들의 허를 찌른 것으로서, 이들 기업들은 그와 반대로 기업결합을 행하고 있다.

“이는 당해 산업에서의 어떠한 결합이든지 행정부의 제지를 받지 않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소비자연맹 워싱턴 사무소 공동대표인 Gene Kimmelman은 말하였다. “이들은 마치 기업결합이 저지되려면 그 규모가 얼마나 커야 하는지 시험하는 것 같다” Bell Atlantic - Nynex 기업결합은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 최소한의 조건 또는 무조건으로 - 인가를 받은 방송사 및 통신회사들간의 일련의 거대한 결합 중 최근의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막 전진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상세한 계획을 세울 때이다.”라고 Bell Atl-

antic 사의 회장인 Raymond Smith는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3~4주 내에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의 최종적 승인이 있으리라 예상한다고 하였다.

법무부가 4월 24일 결정을 발표한 후 뉴욕 주 법무장관인 Dennis Vacco도 당해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1월에 Vacco는 당해 기업결합에 강력히 반대하였는데, 이로 인해 뉴욕 주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하였었다.

작년에 타임워너 사는 Turner Broadcasting System Inc.를 매입하여 미국의 케이블 시스템 및 케이블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는 케이블 거대기업을 형성하였다. 반트러스트 집행 당국으로부터의 이의제기를 피할 수 있었던 기타 방송사간의 거대한 기업결합에는 디즈니 사의 Capital Cities/ABC Inc. 취득, US West Inc.의 Continental Television 매입 및 Bell 계 회사간의 결합인 SBC Communications Corp.의 Pacific Telesis Group 취득이 포함된다. Bell Atlantic - Nynex 결



합의 인가는 진행중인 또다른 거대한 전화회사간 결합인 British Telecommunication PLC의 장거리 전화부문 거대 기업인 MCI Communications Corp. 취득에 좋은 전조라고 반트러스트 전문 변호사들은 말하였다. Bell Atlantic사와 Nynex사의 임원들에게는 정부의 당해 인가가 고통스러웠던 기다림의 시간의 끝을 의미한다. 당해 거래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로 1년을 경과하면서 당사자인 이들 두 회사들은 법무부로부터의 부정적인 결정을 예상하고 법적 반격에 대한 준비를 개시하였었다.

반트러스트 집행당국들은 Bell Atlantic사 및 Nynex사가 약 4,000만 전화회선을 보유한 초대형 Baby Bell 회사를 형성하려는 계획을 세운 이후 당해 기업결합의 결과 탄생할 회사가 갖게 될 시장력에 대하여 우려하여 왔다. 고객들의 장거리 전화통화 중 절반이 이들 회사의 합쳐진 사업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AT&T Corp.와 같은 장거리 전화회사에 비하여 이들 두 Bell계 회사들은 상당한 - 일부에서는 불평등하

다고까지 하는 - 마케팅상 이점을 갖게 된다.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Bell Atlantic사는 애초부터 동회사는 Nynex사의 사업영역인 뉴욕 및 뉴잉글랜드의 인근으로 사업을 확장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여 왔다. 정부가 당해 거래를 저지하려 하였다면 당해 기업결합은 장래의 경쟁을 봉쇄한다고 주장하여야 했을 것인데, 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잠재적 경쟁"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는 GTE Corp., Bellsouth Corp. 및 SBC Communications를 포함하여 사업영역다툼을 벌이는 기타 지역전화회사들의 임원들을 면담하기 시작하였었다.

Bell Atlantic사와는 달리, 여타 회사들은 인접한 사업영역을 침탈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법무부가 면담한 또하나의 Bell계 회사인 PacTel사의 지역경쟁 담당부사장 Lee Bauman은 "고객들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경쟁에 의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동회사는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걸친 GTE의 사업영역을 침탈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다. GTE사의 사장인 Kent Foster는 동

회사는 자사의 시장 반경 100마일 내에 있는 고객들 - 미국 전체 인구의 거의 3분의 2 -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여, 당해 회사가 대다수의 Bell계 회사들과 직접 경쟁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

■ 97, 4/25, The Wall Street Journal

## 미 법무부, 가격고정 가능성 있는 전화 사업권 경매 조사

법무부는 최근 전화 및 통신서비스 사업권에 관한 연방 경매에서의 가격고정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매 대금으로 25억 달러가 들었으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주최하였던 지난 1월 경매에의 참가회사들은 민사소환장을 발부받았다. 주요 입찰회사였던 AT&T Corp.는 입찰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면서 그러나 동회사는 당해 조사를 "일반적 조사"로 호칭하였으며 이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하였다.

당해 조사는 1개월 전 FCC가 텍사스주 Lubbock과 Amarillo 지역에서의 전화 사업권 입찰에 참가한 두 회사의 이의

신청을 법무부에 회부하면서 개시되었다. 법무부는 경매에서의 입찰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고 당해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들은 말하였다.

조사에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입찰회사의 의도를 알리기 위해 특이한 금액으로 입찰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입찰회사들간의 "신호교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특정 도시의 사업권을 획득하고 싶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으로서 100만 달러 대신 100만 25달러의 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경매가 여러 차례의 입찰을 거치는 동안 이러한 신호교환으로 인해 입찰자들은 결과를 조작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조사관들은 경매전문가이면서 매릴랜드 주립대학 경제학 교수인 Peter Cramton와 상의하였는데, 그는 경매 구조 구성에 관하여 FCC의 자문역을 맡았고 경매참가회사들의 자문역도 담당하였다.

Cramton은 당해 조사는 "입찰회사들간의 공동행위"가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였다.

Cramton은 입찰시 신호교환

은 - 만연하는 것은 아니지만 - 최근의 모든 경매에서 존재하였으며 "특히 덜 경쟁적인 경매에서 그러하였다"고 조사관들에게 밝혔다. 그는 "입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낙찰받으려는 자 하는 재산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며 이러한 재산을 더욱 낮은 비용으로 얻어내게 된다면 그만큼 더 좋은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Cramton은 "대부분의 경매에서 입찰자들의 행동과 그 결과는 매우 경쟁적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몇몇 경매에서는 보다 적은 수의 회사들이 참가하게 되고 따라서 경쟁이 적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 결과 입찰자들은 재산을 골라 갖게 되고 그것도 아주 유리한 가격으로이다"라고 Cramton은 말하였다. 그는 막 끝난 무선통신 서비스에 대한 최근의 경매에서는 경쟁이 미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의 공짜로 사업권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당해 문제는 다수의 시장에서의 사업권에 대한 여러 차례의 동시 입찰이라는 FCC의 경매 구도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 동 위원회는 회사들이 전국적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게끔 하기 위해 한 번에 한 도시에 대해 입찰하는 방법 대신 이 방법을 택한 것이다.

"동시 경매를 허용할 경우 반경쟁적 행동의 가능성은 급격히 증가한다"고 예일대 법과대학원 교수이자 경제학자인 Ian Ayers는 말하였는데, 그는 지난 달 반트러스트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전통적인 가격고정이 아니다 - 입찰자들은 만날 필요조차 없다"고 그는 밝혔다.

경매에 참가한 또다른 주요 입찰회사인 BellSouth Corp.는 아직까지 민사소환장을 발부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우리는 관계당국과 접촉하거나 조사방침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애틀랜타에 소재한 Bell 계열인 동 지역 회사의 대변인은 밝혔는데, 동 회사는 무선전화 사업에서 광범한 점유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있는 보도들은 걱정할 것이 못되는데 왜냐 하면 BellSouth사는 그 행동에 FCC의 규칙과 반트러스트법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그는 덧붙였다.

AT&T 사 대변인에 따르면

워싱턴 주 Kirkland의 AT&T Wireless 사에 대하여 법무부의 요청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AT&T 사의 입찰은 AT&T Wireless-Services의 부사장이며 통신서비스 사업권을 획득하는데 노련한 전문가인 Wayne Perry가 주도하였다. AT&T 사가 1994년 매입한 대형기업 McCaw Cellular Communications Inc.의 전 임원인 Perry는 사업본부에 있는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로 AT&T 사의 입찰을 직접 시행했다. AT&T 사의 낙찰비용은 총 20억 달러가 넘었다.

전국에 걸친 이러한 사업권 중 일부는 기존의 전화회사 서비스와 경쟁할 신규 지역전화 사업 및 데이터 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이다.

■ 97, 5/1, The Wall Street Journal

### 미 법무부, IBM 사에 대한 반트러스트 규제 철회

1980년대 탁상용 컴퓨터의 도래 이전까지 컴퓨터 산업을 지배하였던 미국 기업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IBM) 사가 시장력을 제

한하는 규제로부터 드디어 해방되었다. 당해 변화로 인해 IBM 사는 더욱 활발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IBM 사가 개인용 컴퓨터(PC)용의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 칩의 지배적 공급업자인 마이크로소프트 사 및 인텔 사 등에게 영향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고 있다. IBM 사 주식의 현가 계상액은 Lou Gerstner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815억 달러로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1,260억 달러의 인텔 사 및 1460억 달러의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뒤쳐지고 있다.

IBM 사에 대한 규제완화는 금주 미국 법무부가 1956년 개시되었던 IBM 사에 대한 반트러스트 규제를 종료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당해 조치는 이 컴퓨터 거대기업이 펀치카드 계산기 및 전자 데이터 처리기기의 제조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IBM 사가 급여자료 처리와 같은 기능 수행을 위해 기업들이 사용하는 본체 컴퓨터의 제작을 주도하던 1960년대 및 1970년대에는 적절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중요성이 감소된 상태이다.

최근에는 PC의 90퍼센트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계를 개발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규제당국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5년,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인용 회계 소프트웨어 회사인 Intuit 사를 20억 달러로 매입하려던 계획을 저지하였으며 이 소프트웨어 거대기업의 온라인 서비스 계획을 조사하였다.

연방 정부는 작년 IBM 사의 PC 사업부문과 워크스테이션 사업부문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 바 있다. 이번의 규제완화는 5년에 걸쳐 실시될 것인데, 남아 있는 사업부문(AS/400 초소형 컴퓨터 및 시스템 390 본체 기기)을 다루게 된다.

■ 97, 5/2, Financial Times

### 필립 모리스 사, 마케팅 관련 조사받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세계 최대의 담배 제조업체인 필립 모리스사가 경쟁 브랜드제품의 유통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당해 회사를 조사하

고 있다.

지난 14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기업서류의 일부인 간결한 성명에서 필립 모리스 사는 FTC가 당해 회사의 “도·소매 단계에서의 판촉 관행”을 조사하고 있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필립 모리스 사의 대변인은 당해 조사를 “예비적 조사”라고 하였으며, 당해 회사는 제출 서류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하였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FTC 관리들은 논평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당해 조사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동 기관이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아직 당해 회사에 민사소환요구장 - 이의 발부에는 위원회의 표결이 필요함 - 을 발송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그는 필립 모리스 사에 대하여 당장 집행조치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하였다.

필립 모리스 사는 오랫동안 공격적인 마케팅 관행으로 유명하였으며, 가능한 최대한의 판매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최우수 브랜드인 말보로를 이용하여 왔다. 담배산업의 몇몇 관계자는 최근 필립 모리스 사가 한발 더 나아가 경쟁사 브랜드제품

의 판촉용 영구 판매대를 설치하지 않는 소매업체에 보상을 지급하는 새로운 “배타적”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필립 모리스 사의 대변인은 경쟁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다면서 동 회사의 판촉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소매업체들은 당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무엇이 자신의 사업에 최대한 이익인가에 따라” 여러 단계 중에서 선택하도록 허용되어 있으며, “당해 프로그램은 경쟁업체들의 소매시장에서의 판매를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필립 모리스 사에 대한 최근의 조사는 대형 담배회사들이 담배에 관한 손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3월에 FTC 조사관들은 제2위 기업인 R.J. Reynolds Tobacco Co.가 마스코트인 Joe Camel을 사용하여 제작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광고에 대한 조사의 재개를 FTC에 권고했다.

FTC의 당해 조사가 계속되는 화해안 협상 전략의 하나로써 클린턴 행정부가 필립 모리스 사 측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는 신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당해 조사의 목적은 담배시장에서의 경쟁을 더욱 활발히 하는 것으로서, 연방식품의약청(FDA)의 담배 마케팅에 대한 단속과는 일치하지 않는 목표이다.

반트러스트 전문가들은 거대한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반경쟁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의 야기 없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필립 모리스 사의 이른바 배타적 프로그램에 대하여 놀라움을 표시했다. 워싱턴 D.C의 반트러스트 변호사인 Garret Rasmussen은 “나 자신은 이 정도 규모의 회사들에게 배제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마케팅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최근의 조사들은 최근 FTC가 담배산업에 대하여 보인 비상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공화당 행정부 하에서 비교적 활동이 저조했던 이후, 1993년 FTC 담당관들은 Joe Camel 광고가 미성년자들의 흡연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당해 광고를 금지할 것을 동 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1994년, 동

위원회는 B.A.T Industries PLC가 10억 달러로 American Tobacco Co.를 취득할 경우 이미 소수의 대형 담배회사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담배 산업에서의 경쟁은 더욱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 회사를 제소하였다.

■ 97, 5/15, The Wall Street Journal

## 일본

### 홋카이도 칙식은행·홋카이도 은행 기업결합, 공취위가 중점 심사

홋카이도 칙식은행과 홋카이도 은행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홋카이도 내의 1, 2위 은행간의 기업결합으로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경제거래국)고 우려하고 있어, 중점심사의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양 은행을 합친 홋카이도 내의 예금·대출 점유율이 높아, 공취위가 과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인정하는 조건으로서 예금량 및 점포의 일부를 다른 은행에 양도하도

록 행정지도할 것이다.

공취위는 기업결합에 앞서 양 은행으로부터 사전상담을 접수하여, 독점금지법상의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지도할 것이다. 은행간 기업결합에서 공취위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예금 점유율이다. 칙식은행은 도 은행 중에서는 최하위로서 예금 점유율은 약 3%로 작기 때문에 전국 규모로서는 문제는 없다.

다만 공취위는 거래지역 내에서의 경쟁상태를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칙은·도은의 기업결합에서는 홋카이도 내의 예금 점유율의 고저가 문제로 된다. 홋카이도 내의 예금총액은 약 11조엔으로, 이 중 칙은과 도은을 합치면 7조엔 정도로 3분의 2를 점한다. 도내의 다른 은행보다 압도적으로 커진다. 공취위는 기업결합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점유율이 25%를 넘기 때문에 중점심사의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도내 점유율 문제에 대하여 칙은은 기업결합 회견에서 「민간은행만으로 점유율을 보면 신은행은 34%가 되나, 우체국 저축도 포함하면 24%이므로 문제는 아닐 것이다」(大野忠二 부행장)라고 설명했다.

공취위는 도내의 다른 은행이 경쟁할 수 있는지 및 신은행이 압도적인 금융력을 통하여 홋카이도 경제를 지배할 우려가 없는지를 엄중히 체크한다. 각 지역마다 예금 점유율을 조사,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으면 예금 및 점포를 다른 은행에 양도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다만 이번의 기업결합이 중복 점포의 통폐합 등 사업재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기업결합 상대로서 다른 은행과의 결합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공취위는 山陰 합동은행과 후소오은행, 伊予 은행과 東邦상호은행이 기업결합을 할 때에도 특정지역에서 점유율이 높다고 하여 예금·점포의 타행으로의 양도를 기업결합의 조건으로 한 바 있다.

■ 97, 4/1, 일본경제신문

### 공취위, 미쯔이 석유화학·東壓 화학간 기업결합 인가

공정취인위원회는 9일, 미쯔이 석유화학과 미쯔이 東壓화학간의 기업결합을 무조건 승인할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양사에

통보했다. 공취위는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면 점유율이 50%를 크게 상회하는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의 우려는 없다고 하는 새로운 판단을 보였다. 국제경쟁의 격화 및 시장개방의 진전이라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심사기준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점유율만이 아니라 수입을 감안한다는 탄력적인 운용을 한 것으로서, 일본기업의 기업결합의욕을 높여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쯔이 석유화학과 미쯔이 東壓은 작년 9월, 올해 10월의 기업결합에 합의하고,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 공취위에 사전상담을 하였다. 양사가 기업결합할 경우 중핵상품으로서 고기능 수지원료인 페놀의 점유율이 생산능력 기준으로 56.2%, 판매수량 기준으로 57.3%가 된다. 합계 7개 품목에서 「점유율이 25% 이상」이나 「점유율 15% 이상 및 업계 1위」라는 중점심사의 선별기준에 해당되므로, 공취위는 과점의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 중점심사의 대상으로 하

여 왔다.

공취위는 신오지제지와 혼슈제지의 기업결합 등 점유율이 대폭으로 높아지는 경우에는 생산설비를 다른 기업에 매각할 것 등을 기업결합의 조건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시점에서는 점유율이 높고 수입품도 적으며, 수입품과 일본제품간의 품질·가격이 거의 동일하며 수입규제도 없어, 일본제품이 가격을 인상한다면 곧 수입품이 진입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기업결합회사가 「가격 및 수량을 통제할 능력은 없다」고 인정하여 무조건적으로 기업결합을 인정하였다.

■ 97. 4/9, 일본경제신문

### 공취위, 기업결합 심사시 시장 개방 중시

경제계로부터 「국제 화에의 대응이 늦다」(경단련) 등의 강한 비판을 받던 공정취인위원회가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쯔이 석유화학·미쯔이 東壓의 기업결합에서는 경쟁상태의 판단에 장래의 수입가능성을 가미한다고 하는

탄력적인 판단을 보였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일본판 빅뱅(금융제도개혁)을 승인, 홋카이도 척식은행과 홋카이도 은행의 기업결합심사에서 다른 업체의 진입 가능성을 고려할 방침이다. 시장개방 및 규제완화라는 실태에 맞추어 심사기준은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공취위에 따르면 미쯔이 석유화학·미쯔이 東壓의 기업결합과 같이 점유율이 50%를 넘는 대형 기업결합이 인정된 것은 「69년의 신일본제철 사건 이래 처음」이다. 그러나 신일철 사건에서는 일부제품 점유율 인하책을 취하도록 명하였으나, 이번에는 무조건이다.

94년의 小野田 시멘트와 秩父 시멘트의 기업결합에서는 수입품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약 25%였던 점유율의 인하를 요구하였다. 96년의 신오지제지와 혼슈제지의 기업결합에서도 점유율 33%인 중금인쇄용지의 생산축소를 요구하였다. 이 때문에 산업계로부터 「기업결합심사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강하였다.

공취위는 개별적 사전상담의 사례를 처음으로 공표하고, 점

유율이 최우선은 아니라는 유연한 자세를 선명히 하였다. 이토다 사무총장은 수입가능성의 가미에는 「객관적, 합리적으로 수입확대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후에, 품질의 차가 작을 것 등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시장개방 및 규격통일의 흐름 속에서 공취위는 대형 기업결합에는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으로 보여진다. 빅뱅이 진행되면 금융기관의 기업결합 심사도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 97. 4/9, 일본경제신문

## 공취위, 전력의 발·송전 분리 제언

공정취인위원회는 4월 30일, 전력회사의 발전·송전·배전 사업의 분리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각 사업마다 신규진입자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서, 이것이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각 사업의 비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분회계를 철저히 하는 회계상의 분리에 착수하고, 장래에는 별개의 회사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경영형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발·송전 분리는 사토 신지(佐藤信二) 통산상이 제창하고 있으나, 자원에너지청과 전력업계는 소극적이다. 공취위의 제언은 정부가 5월 중순에 마무리할 경제구조개혁에 포함될 전력개혁에 영향을 줄 것 같다.

공취위는 전기사업에 대하여 지역독점이라 경쟁이 적기 때문에 국제수준보다 요금이 높다는 것을 문제시하여, 지식인들에 의한 「정부규제 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의 보고서의 형태로 경쟁촉진책을 제언하였다.

발전사업에서는 전력회사가 일반기업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입찰의 규모확대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전력회사 자신이 발전비용을 공표한다든지 입찰에 참가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또한 자가발전을 활발히 하기 위하여 잉여전력을 전력회사가

적극적으로 사들인다든지, 기업이 자가발전한 전력을 전력회사의 송전선을 빌려 먼 지역의 자회사에게 보내는 「자기탁송」을 전력회사의 의무로 하는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력의 소매분야에 대하여서도 경쟁촉진을 요구하였다. 일반기업이 자가발전한 전력을 인근의 관련회사에 판매하는 특정공급과,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특정전기사업제도의 규제완화 및 전력회사가 공급구역 외의 대량수요가와 계약할 수 있는 대량공급의 자유화 등을 제언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강대한 전력회사가 전체적으로 발전·송전·배전을 장악하고 있으면 각 사업의 신규진입이 곤란하다고 하여, 회계상·조직상의 분리를 검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기사업 뿐만 아니라 가스사업에 대하여서도 분석, 일반기업이 도시가스회사의 공급구역 내에서 가스사업을 할 수 있는 대량공급제도의 대상범위의 확대 및 간이가스사업의 규제완화에 의한 도시가스회사와의 경쟁촉진 등을

제언하고 있다.

■ 97. 5/1, 일본경제신문

**일본 정부 독점금지법 개정, 연내에 시행**

일본 정부는 지주회사의 전면적인 금지를 해금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금지법 개정안이 지난 6월 11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은 독점금지법 제정이래 사업지배력집중의 설립과 전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왔으나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 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독점금지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의 해금을 검토하여 왔다. 또한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에 관해서도 같은 관점에서 규제대상을 완화하고, 국제계약신고제도에 대해서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사업자의 부담경감의 관점에서 폐지키로 한 것도 이번 법개정에 포함시켰다.

**1. 개정의 요지**

(1) 지주회사 관계

가. 사업지배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을 금지(개정법 제9조 제1항·2항)

나. 지주회사를 「자회사 주식취득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당해회사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회사」로 정의(간접보유에 의해 50%를 초과 하는 경우 포함)(개정법 제9조 제3항·4항)

다.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에 대한 정의조항(定義條項)을 신설(지주회사 그룹의 종합적인 사업규모가 상당수의 사업분야에 걸쳐 현저히 크고 자금과 관계되는 거래에 기인하는 타사업자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히 크거나 또는 상호 관련성이 있는 상당수의 사업분야에 있어 각각 유력한 지위를 점유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 공정 및 자유스런 경쟁의 촉진을 저해하는 경우)(개정법 제9조 제5항)

라. 감시절차를 규정함(지주

회사와 자회사의 총자산의 합계액이 3,000억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에 회사의 사업에 관해 보고하도록 함)(개정법 제9조의2 제1항 본문)

(2)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 총액제한 관계

가. 규제대상이 되는 대규모회사에서 지주회사를 제외함(개정법 제9조의 제1항 본문)

나. 적용제외주식을 추가함

- 1) 주식보유 총액의 제한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회사에서 지주회사는 제외
- 2) 자기 및 타회사가 각각 현재 영위중인 업무를 분리하여 설립하는 회사의 주식의 일부를 설립과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총액 제한에서 제외함(당해회사가 설립시의 업무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개정법 제9조의2 제1항 제5호)
- 3) 100% 자회사의 주식(개정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



4) 벤처투자의 주식(개정법 제9조 제1항 제10호)

(3) 국제계약신고관계 신고제도를 폐지함(현행법 제6조 제2항 삭제)

(4) 기타

독점금지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일자, 국제계약신고는 공포일 부터 시행)

〈참고〉

지주회사금지에 대하여 현행법에서는 모든 지주회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업지배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지주회사의 경우만 금지

※ 현행법(제9조)

① 지주회사는 이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② 회사(외국회사 포함)는 국내에 있어서 지주회사로 되어서는 안 된다.

③ 전 2항에 있어서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국내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 일본 통산성, 도시가스 공급구역 진입규제 완화

통산성은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도시가스의 공급구역에 다른 업자가 신규진입하도록 촉진키로 했다. 허가제로 되어 있는 대량수요가용 「대량공급」의 공급기준을 인하하고 단지용 간이가스사업의 요건도 완화하여, 이용자가 가스업자를 선택할 기회를 확대한다. 이는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유럽·미국의 약 2배 정도 높은 가스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비용구조의 시정을 목표로 이를 5월 중순에 마련될 경제구조개혁계획에 포함시키고, 1998년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통산성은 7일부터 도시가스 업계대표와 지식인들이 참여하는 연구회를 개최하고 내년 봄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2001년까지의 행동계획을 작성할 방침이다. 도시가스 사업은 도관의 설비투자부담

및 공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급구역을 정하여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규제완화로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통산성은 우선, 구역 내의 대량수요가에 대하여 구역 외의 다른 도시가스업자 및 일반기업이 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대량공급」의 범위를 확대한다. 대량수요가의 범위는 대형호텔에 상당하는 연간계약량 200만 입방미터 이상으로, 지금까지의 실적은 6건 뿐이었다. 공정취인위원회는 100만 입방미터 이상으로 기준을 인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인하폭에 대하여서는 관계업계에서 조정하게 된다.

실적이 없는 「탁송」의 조건도 정비한다. 신규로 도관을 부설하지 않아도 기존의 도관을 임차하여 가스를 송출함으로써 신규진입이 쉬워지도록 하게 되며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가스업자의 대량수요가용 가격의 정보공시도 요구할 방침이다.

일반가정용에서는 도시가스의 공급구역 내에서 70가구 이상의 단지에 LP가스를 도관으

로 공급하는 간기가스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선택기회를 늘려, 도시가스와 LP가스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 97, 5/5, 일본경제신문)

### 손해보험요율산정회에 대한 독금법 적용제외 폐지

대장성과 공정취인위원회는 손해보험 요율산정단체인 산정회에 독금금지법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1998년에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손해보험업계 내에서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고 경쟁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손해보험 각사는 독자적인 보험요율의 설정 압력을 받으므로, 회사간의 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요율산정회에는 화재, 상해보험 등 손해보험요율산정회와 자동차보험요율산정회의 두 가지가 있다. 두 산정회 모두 회원인 손해보험 각사로부터 수집한 손해율 등의 자료를 근거로 기준이 되는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이 요율의 사용을 손해

보험 각사에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업계 내에서 보험료를 조정하는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으나, 손해보험시장의 혼란 회피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독금법의 적용을 제외, 이를 인정하고 있다.

산정회는 「보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손해보험 각사의 자료를 공동처리하는 업무는 불가결하다」고 하여 적용제외의 계속을 요청하였으나, 공취위는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대장성도 1998년 7월에 산정회 요율의 사용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공취위에 동조할 방침임을 결정하였다.

적용제외제도가 폐지되면 산정회는 손해보험회사의 경비율을 포함한 보험요율 전체의 참고치를 제시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며 손해율만을 산출하는 자료제공기관으로 변화하고, 회원인 손해보험 각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때마다 공취위의 이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또한 손해보험 각사는 산정회가 제공하는 손해율을 기준으로 자사의 경비율을 추가한 독자의 보험

요율을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되며, 새로운 시스템 투자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된다. 보험요율 경쟁이 가속되어 자금력이 약한 중소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 97, 5/7, 일본경제신문

###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제1회 APEC-PFP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

공정취인위원회는 타이 정부와 공동으로 3월 18일(화)부터 21일(금)까지 4일 동안 방콕에서 「제1회 APEC-PFP 경쟁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는 APEC 가맹 16개국, 지역 및 OECD, UNCTAD의 경쟁당국 등의 상급간부 및 정부 각계의 경쟁전문가 53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의 내용은 경쟁법·정책에 관한 주제에 대한 강의·토론과 개발도상국·지역의 참가자 대표에 의한 각국·지역의 경쟁법·정책의 현상에 대한 발표였으며, 전문적이고 질

높은 토론이 행해졌다.

PFPP(Partners For Progress)는 APEC(아·태 경제협력기구)에서의 경제·기술협력력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협력의 구조로서, 일본이 제창한 것이며 1995년의 APEC 오사카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었다. PFPP는 APEC의 회원국들이 자주적으로, 또한 자금공여, 시설제공, 강사파견 등 각각 가능한 범위에서 상호간에 협력하여 실시하는 다자간 경제·기술협력 메카니즘이다.

이번의 세미나를 포함하는 PFPP 경쟁정책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경쟁법·정책의 정비와 그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APEC 역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환경을 정비하고, 무역·투자의 자유화·원활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의 세미나를 시작으로 제2회부터는 APEC의 개발도상국·지역의 경쟁당국 등의 과장·과장보좌역급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2000년까지 매년 1회 2주간의 연수를 개최

할 예정이다.

■ 97, Vol. 25, No. 5 국제상사법무

## EU

### 독일 연방 최고법원 CD-ROM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인정하는 판결

독일 연방 최고재판소는 문서가 저장된 CD-ROM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합법으로 보아 이를 금지한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건의 원고는 법률전문서적의 출판으로 유명한 C. H. Beck 출판사(뮌헨 소재)로서 본 출판사는 지난 93년에 「新법률주보(Die Neue Juristische Wechenschrift)」와 같은 전문잡지 및 판례집을 CD-ROM으로 출판하면서 재판매가격을 도입하였다. 즉 서점이 이러한 CD-ROM을 주문할 경우 동 출판사가 정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만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에서

가격구속협정은 기본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출판물」에 관해서는 동법 제16조에 의해서 예외를 인정하여 왔다. 「문화적인 서적」에 관한 예외조항은 이 규정이 만들어진 당초부터 범정책적인 면에서 쟁점이 되어 왔다. 지금까지 연방카르텔청 장관은 서적의 재판유지를 전자적인 데이터 매체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방카르텔청은 이 분야에 대하여 C. H. Beck사에 대한 소송에 전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타출판사에 대하여서는 재판유지를 금지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즉각 당해 상품의 재판유지를 금지하겠다는 것을 출판사측의 석명을 받고 정식으로 금지결정의 수속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연방카르텔청의 전략은 연방최고법원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동 법원은 문서가 저장된 CD-ROM의 재판유지는 합법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이를 위법으로 판정한 연방카르텔청 및 「Berlin」최고법원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연방최고법원은 「CD-ROM」

은 그 성질로 보아 서적과는 다른 상품으로 저장된 문서를 손수하게 「읽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용가능성도 가지고 있어 결국에 수많은 부가적인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Data Base라고 정의함으로써 연방 카르텔청의 주장을 물리쳤다. 연방최고법원은 『확실히 경쟁 제한금지법 제16조는 재판금지의 예외로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출판물」의 개념은 입법자가 고려할 수 없었던 기술적인 발전 분야에 대해 이를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진술하는 동시에 이러한 신제품에 대해서는 이용자 입장에서 서적의 대응품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연방최고법원은 본건에 관하여 이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독일서적조합은 본건 판결을 역사적인 것이라고 환영하고 동 조합의 대변인은 「이를 계기로 새로운 전자출판형태가 인정되게 되었다.」라고 언급하였다. 지금까지는 문서가 저장된 CD-ROM은 슈퍼마켓이나 기타 할인점에서 저가격으로 판

매할 수가 있었다. 서적업계는 이러한 저가격이 문화적인 서적의 위기라고 보았다.

그러나 서적의 재판이 오래 지속될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구주위원회는 서적의 재판이 구주공동시장에 대한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곧 결정할 예정이며 이 결정여부에 대하여 서적업계에서는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다.

■ 97. 3/13, 한델스 프러드

### 영국 공정거래청 수직적 제한 규제 재검토 개시

영국 공정거래청(OFT)은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간의 반경쟁적 구속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에 관하여 검토를 개시할 뜻을 천명하였다.

이 제안은 12월 11일, 가격 구속 및 배타적 유통거래라는 반경쟁적 구속관계를 해설한 보고서( 'Vertical Restraints and Competition Policy' )에서 명확해졌다.

동 보고서는 OFT로부터 당

해조사를 위탁받았던 Paul Dobson 노팅엄 대학교수 및 Michael Waterson 워릭 대학교수가 집필한 것으로서,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현행의 수직적 제한 규제에 관하여서는 상당한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정책변경된 적이 없고, 비가격 제한에 대하여서는 대체로 소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 왔다.

② 시장지배력을 갖는 사업자에 의해 수직적 제한행위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당해행위는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그 경우의 부정적 효과는 수직적 제한에 의해 발생하는 효율을 능가한다. 따라서 일부의 경제학자에 의한 「수직적 제한은 사업자의 효율을 촉진하므로 유익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③ 수직적 제한행위는 기본적으로 사건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하의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조사방법이 필요하다.

가. 당해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가.

나. 경쟁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 수직적 제한에 의해 효율이 발생하는가.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영국에서 슈퍼마켓 및 체인점이 자신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제조업자 뿐만 아니라 소매업자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획득하여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수직적 제한의 영향을 평가할 때에는 제조업자만이 아니라 소매업자에 대하여도 시장지배력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식료품의 소매분야에서 현재 이상의 시장집중이 진행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 고액 및 고율의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가격경쟁이 회피되고 있는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독점 및 기업결합위원회(MMC)에 의한 맥주, 청량음료, 가솔린, 자동차 및 아이스크림의 유통조사에 대하여서도 분석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맥주 및 청량음료업계에 관한 MMC의 평가에 대하여서는 이

에 동의하고 있으며, 또한 가솔린의 유통에 대하여 구속거래에 의한 폐해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MMC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및 아이스크림업계의 유통에서의 구속적 거래에 대하여서는 MMC의 평가 이상으로 엄격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존 브리지먼 OFT 장관은 『이번의 연구는 특정 상황에서는 수직적 제한이 경쟁저해효과를 가짐을 확인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또한 「우리는 수직적 제한에 관한 정책 중에서 양교수가 제안한 처리방법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갈 것인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중요한 수직적 제한에 관한 규제에서 경쟁정책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제안은 수년간 수직적 제한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집행을 지지하여 온 경쟁정책담당자간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 또한 정부의 경쟁법개정안은 경쟁정책의 복수의 분야에 관계된 중

요한 재검토를 포함하고 있으나, 수직적 제한에 관한 규제의 강화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유럽위원회 경쟁총국은 수직적 제한에 관한 꽤 엄격한 법률을 보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유통에 관한 일괄적용면제규칙의 채택(1995년 10월 시행, 2002년말 만료)과 같이 수 차례 당해 법률로부터의 일괄적용면제를 부여하는 결정을 행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에서는 수직적 제한규제의 재검토를 1997년으로 예정하고 있다(註: 동 위원회는 1997년 1월 22일, 「수직적 제한에 관한 그린페이퍼」를 발간하였다).

■ 96, 12/11, 영국 공정거래청 신문발표문 & 97, Vol. 25, No. 4 국제상사법무

### 베를린 고등법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가격남용 사건에서 연방카르텔청 결정 지지

베를린 고등법원은 1월 15일,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인 슈프레 가스 사가 책정한 가스요금을 가격남용행위로 인정하여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한 연

방카르텔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동 회사의 제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슈프레 가스 사는 브란덴부르크 주 전역 및 작센 주·작센안하르트 주 일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연방카르텔청은 동 회사의 일반용 및 대량수요가용 가스요금에 동 회사 공급지역의 근교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EWE 사의 가스요금보다 적어도 10퍼센트는 높다고 하여, 1995년 10월에 슈프레 가스사에 대하여 EWE 사의 가스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고객에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연방카르텔청에 따르면, 슈프레 가스 사의 행위는 경쟁제한 금지법 제10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에너지공급사업자에 관한 동법적용제외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이 경우 에너지공급사업자가 동종의 사업자보다 높은 요금 또는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그 차이점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별개의 사정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남용에 해당한다.

본건 소송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카르텔의 금지에 관한 적용제외규정에 의해 에너지공급사업자는 지역독점이 인정되어 있으나, 슈프레 가스 사는 가스와 난방용 기름은 대체재로서 이들간에 경쟁이 존재하고 있어, 동 회사는 시장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야로베츠키 재판장은 본건에서는 시장지배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스와 난방용 기름간에 경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영향은 없다고 하였다.

(2) 슈프레 가스 사 및 EWE 사는 양측 모두 슈프레 가스 사의 출자자의 하나인 페어분트네츠 가스 사로부터 가스를 구입하고 있다. 동 재판장에 따르면, 양 회사의 가격차의 일부는 슈프레 가스 사의 구입량 쪽이 적기 때문이고, 이에 따르면 할인이 보다 적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으나, 슈프레 가스 사는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한편, 동 회사의 변호사는 동 회사는 EWE 사의 요금책정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연방카르텔청은 EWE 사의 요금은 공개되어 있다고 반론하였다.

(3) 슈프레 가스 사는 동 회사 및 EWE 사가 「같은 형태의」 사업자라는 점에 대하여서도 다른 의견을 주장하였으며, 동 회사는 피폐한 공급망 등 구 동독 시대의 유산의 다수를 이어받았음에 비하여 EWE 사는 구 동독지역에서 8억 마르크의 신규투자를 행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동 회사는 과거 수년간 고객이 15만 명에서 2만 명으로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베를린 고등법원은 슈프레 가스 사와 EWE 사의 가스요금간에는 부당한 불균형이 있다고 한 연방카르텔청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본건에 이어 연방최고법원에의 상고가 인정되었다.

■ 97, 1/16, Handesbradt & 97, 1/16, Frankfurter Allgemeine & 97, Vol. 25, No. 4 국제상사법무

## 영국 제한적거래관행법원, 서적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적용제외에 대한 폐지판결

제한적거래관행법원은 지난 3월 13일 존 프리즈만 공정거래청장의 신청을 인정하여 서적의 재판매가격유지제도(Net Book Agreement ; NBA)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NBA에 의한 제한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29년간 지속하여 온 서적과 지도(地圖)의 재판매가격유지를 종료시킬 것을 요지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적은 자기가 판매하는 서적 등의 판매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헤리스 판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법원은 국민이 NBA의 폐지로 어떠한 便益이나 메리트를 빼앗기게 되는가를 검토했으나 전혀 이를 거증할 수가 없었다. 대중을 위한 종이표지의 책(Pepperback)의 가격이 최근에 일반적인 인플레이션보다도 약 2배 상승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로 NBA가 실시되고 있는 시기에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재판유지행위가 가격을 억제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이 재판유지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NBA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1962년 이래 29년간 지속되어온 상황이 실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존 프리즈만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NBA의 붕괴는 1962년 판결의 토대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즉 인쇄기술이 본질적인 면에서 변화를 일으키자 서적은 자신의 위험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출판에 앞서 행하는 서적의 주문량을 줄이게 되었다. 또한 영국의 전 영역에 걸친 전문서점의 체인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각종의 서적을 진열하고 있다. 또한 도매업자는 신속한 배송이나 주문서비스를 하게 되며 서점은「팔리지 않으면 반품하는 것(Sales or return ; 期

限附委託販賣)」을 조건으로 보다 많은 책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 프리즈만 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근대적인 생산이나 유통 방법에 따라 출판사간의 재판매가격유지협정의 필요성은 없어졌다. 출판업계에서 2년전 NBA는 자발적으로 붕괴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걱정이 되던 전문서점의 도산도 없었다. 20세기초부터 지금까지 출판사간에는 제한적인 협정이 존속하여 왔으나 지금은 이를 항구적으로 폐지할 때가 되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소비자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일부 의약품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법률상 인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지금은 서적이 어떠한 제재로부터 구속당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었다.”

프리즈만 장관은 서적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를 폐지하고

NBA가 장래에 부활되지 않도록 제한적거래관행법원에 이와 같은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註) ① NBA란 출판사간의 협정으로서 약간의 예외가 있으나 출판사가 정한 정가(net price)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점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임.

② 법원은 1962년에 NBA에 대하여 심사하였는데 당시 법원은 NBA가 공공의 이익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때 법원은 NBA가 없는 경우 많은 종류의 서적을 판매하는 서점은 감소하면서 가격은 상승하며 출판된 서적의 종류도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당해 판결에 이어 1968년 법원은 서적의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를 계속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③ 구주법원은 NBA가 가맹국간의 거래에 영향을 주는 한 동 협정이 EC 조약 제85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구주위원회 결정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구주위원회는 출판사단체로부터의 NBA에 관한 조약 제85조

제3항에 기초한 적용제외의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는 중임.

④ 현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인정되는 유일한 상품은 일부의 약정뿐임.

공정거래청 장관은 지난 1996년 10월 10일, 이에 대한 적용제외의 폐지를 법원에 신청할 생각이 있음을 표명한 바 있음.

■ 97. 3/13 영국공정거래청 발표 & Vol. 25, No. 5 국제상사법무

영국, 유럽연합을 공격

블레어 영국 노동당정권이 기업결합·제휴에 대한 독금법의 적용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버스 회사인 National Express 사의 민영화철도회사 매수에 관하여, 베케트 통상산업부 장관은 조건부로 이를 인가하였던 공정거래청(OFT)의 답신을 번복, 독점 및 기업결합위원회(MMC)의 재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기업결합·제휴심사에는 통상 OFT가 1차 심사를 행하고, 독금법상의 의혹이 강

한 경우에 MMC에서의 재심사를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청구하는 내용으로 답신을 송부하였으며, OFT가 인가한 안전을 통상산업부 장관이 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구 보수당 정권부터 끌어 온 영국항공(BA)과 아메리칸항공(AA)의 제휴 심사 등도 미루어지고 있어, 산업계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BA-AA 제휴에 대하여서는 작년말에 BA의 히드로 공항 이용구역의 1주간 168회분을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인가한 OFT의 답신이 있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가 「조건이 지나치게 미약하다」고 경고, 영국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 97. 5/27, 일본경제신문